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81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이학영 · 한민수 · 김 윤
강준현 · 김주영 · 위성곤
서미화 · 이정문 · 정태호
전용기 · 최혁진 · 한정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수로 등”을 “수로, 도로 등”으로, “충돌·추락”을 “충돌·추락·교통사고(이하 “사고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야생동물 등의 사고등 발생 시 대응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이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등을 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대응 방안
2.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상태별 담당 기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방법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u>수로</u>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u>충돌·추락</u>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 ----- ----- ----- -----수로, 도로 등----- -----충돌·추락·교통사고(이하 “사고등”이라 한다)----- ----- -----.
② ~ ⑤ (생 략) <u><신 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2(야생동물 등의 사고등 발생 시 대응 방법) ①</u>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동물등”

이라 한다)이 인공구조물에서 사고등을 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대응 방안

2. 사고등을 당한 동물등의 상태별 담당 기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대응방법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